

국외로 전출하시는 여러분

주민세 납부를 잊지 마시길 !



연도 도중에 국외로 전출해도 그 연도의 개인 주민세는 과세되며, 1월 2일 이후 납세 통지서가 발송된 후 전출한 경우는 다음 연도에도 과세됩니다.

전출하기 전까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납세관리인 선임

전출로 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어 납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출하기 전에 납세 관리인을 선임해 주십시오.

납세관리인은 납세 의무자의 대리인으로서 납세나 환급금 수령 등을 대신합니다.

일괄 징수

매월 급여에서 개인 주민세가 공제(특별 징수)되고 있는 분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 나머지 세액을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으로부터 일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12월 사이에 퇴직하여 일괄 징수를 희망하는 경우는 그 취지를 회사에 전달해 주십시오.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업소를 퇴직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괄 징수됩니다.

납세관리인 절차는 URL 또는 2차원 코드를 통해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city.higashiosaka.lg.jp/cmsfiles/contents/0000043/43348/kankoku.pdf>



【문의처 · 제출처】

06-4309-3135

히가시오사카시 세무부 시민세과

(본청사 3층 35번 창구)